

의안번호	2207339
의 퇴 인	박희승의원
회 답 일	2025.1.14.
추계번호	24E64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금액(추가공제) 상향조정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적공제(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소득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2,330억원, 2030년 2,286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조 1,538억원(연평균 2,308억원)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장애인 추가공제 확대 (안 제51조제1항)	-2,330	-2,319	-2,308	-2,297	-2,286	-11,538	-2,30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적용 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소득공제금액 두 배로 상향조정 - (개정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장애인”)의 경우 1명당 연 200만원(<u>장애인 및 장애아동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 400만원</u>)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징수기준)
-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편하였으므로, 심한 장애를 가진 자를 중증장애인으로 정의
 - 다만, 현행 인적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수를 알 수 없어 통계청의 ‘장애인 현황’조사상 전체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자의 비율을 활용하여 추계
 - 장애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자(중증장애인)의 비율은 36.8%로, 향후에도 동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현행 인적공제 대상자 수에 중증장애인 비율(장애인 현황조사, 2023년 기준)을 곱하여 중증장애인 수 추정
-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공제 규모

- 2023년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장애인 추가공제금액 규모는 각각 2.5조원, 1.4조원으로 각각 최근 3년(2020~2023년) 동안 연평균 5.9%, 18.8% 증가

[표 2]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2021	2022	2023	연평균
적용인원	936,483	1,083,051	1,103,703	1,041,079
(증가율)	(1.7)	(15.7)	(1.9)	(6.2)
공제금액	2,100,284	2,420,010	2,457,726	2,326,007
(증가율)	(1.6)	(15.2)	(1.6)	(5.9)

주: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2021	2022	2023	연평균
적용인원	433,619	517,014	636,434	529,022
(증가율)	(13.0)	(19.2)	(23.1)	(18.4)
공제금액	944,506	1,125,840	1,402,030	1,157,459
(증가율)	(13.0)	(19.2)	(24.5)	(18.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2023년 기준 전체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36.8%)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 국세통계연보상의 소득규모별 장애인 인적공제 신청인원 중 36.8%는 장애인 1인당 4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고 가정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공제금액 추정

- 개정안 기준의 소득규모(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별 소득공제금액을 추정한 후, 현행 대비 소득규모별 공제금액 변화분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 수효과 추계

(3) 추계 결과

-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인적공제 금액(추가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소득세는 2023년 기준 2,3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근로소득세는 1,598억원, 종합소득세는 7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제외하여 추계
 - 가장 최신 자료인 2023년 귀속 기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추계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세수효과 제시

[표 4]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¹⁾		개정안	1인당 소득공제금액 변화분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³⁾ (%)	세수효과 ⁴⁾ (억원)
	장애인 추가공제 신청자 수	소득공제금액	소득공제금액 ²⁾			
	A ⁰	B	C	D=(C-B)/A ⁰	E	F=-(D×E)×A ¹
합계	1,103,703	2,457,726	3,362,169	-	-	-1,598
1천만 이하	-	-	-	-	-	-
1.5천만 이하	-	-	-	-	-	-
2천만 이하	8,382	16,764	22,933	0.74	6%	-2
3천만 이하	66,014	133,170	182,177	0.74	6%	-21
4천만 이하	74,600	153,030	209,345	0.75	15%	-67
4.5천만 이하	43,462	89,884	122,961	0.76	15%	-41
5천만 이하	50,653	105,930	144,912	0.77	15%	-49
6천만 이하	121,338	259,408	354,870	0.79	15%	-121
8천만 이하	253,734	565,066	773,010	0.82	15%	-266
1억 이하	206,657	476,684	652,104	0.85	24%	-359
2억 이하	250,453	590,884	808,329	0.87	35%	-611
3억 이하	19,569	46,406	63,483	0.87	38%	-44
5억 이하	6,311	14,666	20,063	0.86	40%	-12
10억 이하	2,042	4,678	6,400	0.84	42%	-4
10억 초과	488	1,156	1,581	0.87	45%	-1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의 추가공제 신청 인원 및 공제금액임

2) 소득규모별 장애인 인적공제 신청 인원 중 36.8%는 장애인 1인당 4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는 현행 수준의 20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

3)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한계세율 적용

4) 최종 세수효과는 소득규모별 1인당 소득공제금액 변화분(D)에 한계세율(E) 및 적용인원 수(A¹)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추계하였으며, 적용인원 수(A¹)는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장애인 추가공제 신청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기준의 추정치로,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2022년 귀속, 국세청 제공)을 반영하여 추정한 수치를 사용함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세, 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규모	현행		개정안	1인당 소득공제금액 변화분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²⁾ (%)	세수효과 ³⁾ (억원)
	장애인 추가공제 신청자 수	소득공제금액	소득공제금액 ¹⁾			
	A ⁰	B	C	$D=(C-B)/A^0$	E	$F=-(D \times E) \times A^1$
합계	636,434	1,402,030	1,893,646	-	-	-754
1천만 이하	65,536	134,886	184,524	0.76	6%	-16
2천만 이하	114,530	243,734	333,428	0.78	6%	-45
3.5천만 이하	141,556	306,540	419,347	0.80	15%	-151
4천만 이하	33,385	73,512	100,564	0.81	15%	-39
5천만 이하	52,725	117,652	160,948	0.82	15%	-64
6천만 이하	40,347	91,184	124,740	0.83	15%	-50
8천만 이하	60,245	138,812	189,895	0.85	24%	-122
1억 이하	36,507	84,838	116,058	0.86	24%	-74
2억 이하	61,011	142,526	194,976	0.86	35%	-182
3억 이하	11,417	26,148	35,770	0.84	38%	-36
5억 이하	6,483	14,782	20,222	0.84	40%	-21
7억 이하	2,023	4,580	6,265	0.83	42%	-7
10억 이하	1,107	2,514	3,439	0.84	42%	-4
10억 초과	1,125	2,536	3,469	0.83	45%	-4

주: 1) 소득규모별 장애인 인적공제 신청 인원 중 36.8%는 장애인 1인당 4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는 현행 수준의 20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

2)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소득세 신고자 1인당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한계세율 적용

3) 최종 세수효과는 소득규모별 1인당 소득공제금액 변화분(D)에 한계세율(E) 및 적용인원 수(A¹)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추계하였으며, 적용인원 수(A¹)는 장애인 추가공제 신청자 중 결정세액 보유자 수 추정치로, 종합소득금액 신고자 중 결정세액 보유자 비율(2023년 기준 77.6%)을 반영하여 추정한 수치를 사용함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3년 중증장애인 증가율(-0.48%)을 따를 것으로 가정
 - 장애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3) 동안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연평균 0.48% 감소
-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조 1,538억원(연평균 2,3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1,583	-1,575	-1,568	-1,560	-1,553	-7,838	-1,568
종합소득세	-747	-744	-740	-737	-733	-3,701	-740
합계	-2,330	-2,319	-2,308	-2,297	-2,286	-11,538	-2,308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조 1,538억원(연평균 2,3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1,583	-1,575	-1,568	-1,560	-1,553	-7,838	-1,568
종합소득세	-747	-744	-740	-737	-733	-3,701	-740
합계	-2,330	-2,319	-2,308	-2,297	-2,286	-11,538	-2,308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